

의안번호	2216631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2.19.
추계번호	26B0755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지원 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u>국적·거주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음</u>	재량규정
2	안 제3조(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4.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재량규정
3	안 제6조(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u>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지원대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3	안 제6조(업무의 위임·위탁)	—	• 미대상 - 개정안은 「과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안 제2조) 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파독광부간호사법”)에 따른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국적·거주지를 불문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파독광부간호사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발생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08년 9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으며,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에 관한 통계는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 통계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으로 총 1만 8천 993명이었음”
 - － “광부는 파독기간과 주선 기관이 비교적 명확해서 파독 규모가 쉽게 파악되지만, 간호사는 공식적 파독으로 보는 1966년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¹⁾

1) 다만,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현행법의 지원대상자는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표 1] 연도별·직종별 파독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광부	간호요원	기능공
1963	247	247	1,043	—
1964	806	806		—
1965	1,198	1,180		—
1966	1,513	286	1,227	—
1967	428	7	421	—
1968	94	3	91	—
1969	847	10	837	—
1970	3,022	1,305	1,717	—
1971	2,731	982	1,363	476
1972	1,728	71	1,449	208
1973	2,176	842	1,182	152
1974	2,386	1,088	1,206	92
1975	462	—	459	3
1976	376	314	62	—
1977	795	795	—	—
계	18,899	7,936	11,057	931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9.23.)

□ (안 제3조) 현행법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등²⁾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지원 의료·생활·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은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관련 사업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생활·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큼
- 다만,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추진할 의료·생활·주거 안정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표 2] 현행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124	124	124	124	124

자료: 고용노동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 자료: 고용노동부

□ (추진 배경)

- 2013.5월 파독광부·간호사 기념 등을 위해 파독근로자기념관 설립·운영→2020.5.20. 「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20.6.9.공포)→2021.6.10. 시행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사업 개요)

- **(목적)** 파독 광부·간호사가 국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재발견하고 기념·지원사업 수행
- **(내용)** 파독 기념물 전시·홍보, 파독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행사 개최, 파독근로자 및 그 후손 등 파독 관계자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 등
- **(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수행방법)** 운영기관 공모·위탁(2년 단위, 재위탁 가능)
- **(예산)**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예산 124백만원*

* 운영인력(학예사1명, 행정지원1명) 인건비(70백만원),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30백만원), 제세공과금(24백만원)

□ (기대 효과)

- 60~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최초의 대규모 인력 진출 및 해외동포사 측면에서 중요한 현대사적 가치 보존·전수
-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역사적 자료를 보존·전시함으로써 대국민 역사교육 및 인식 제고, 홍보 효과 증진